

## **CITY OF HANFORD**

###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 \* \* \* \*

본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제116906조의 목적상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핸포드시의 (도시) 서면 정책을 구성합니다.

1. **수도 서비스 요금의 연체 납부.** 핸포드 자치규약(HMC) 제13.04.050조에 따라, 시에서 발급한 공과금 서비스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수도 서비스 요금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 금액에는 (a) 시의회가 정한 연체료, (b) 시의회 결의에 따라 정한 기타 수수료, 벌금 및 이자 등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로 총칭함)가 부과됩니다.
2. **서비스 중단.**
  -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고객이 수도 서비스 요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수도 서비스 요금이 연체된 날로부터 60번째 역일 오후 5시까지 요금 납부 계획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시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하여 고객이 받고 있는 수도 및 기타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b.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앞서 최소 7영업일 전에, 시는 보건안전법 제116908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전화 또는 서면으로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 c. 고객이 보건안전법 제116910조의 재정적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은 해당 조항에 기술된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d. 다음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시는 미납을 이유로 주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 (1) 고객이 재정적으로 시의 일반 청구 주기 내에 주거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고객 가구 구성원 중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 보조금/주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 고객은 시의 일반 청구 주기 내에 주거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과 관련하여 시의 중단 정책에 따라 할부 계약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합의할 의향이 있는 경우.

### **3. 납부 계획.**

- a. 납부 계획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공되며 이것은 고객이 서명한 서면 납부 합의서에 명시됩니다.
  - i. 고객이 납부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모든 미납 유틸리티 서비스 잔액의 1/4 납부
  - ii. 나머지 잔액은 고객이 납부 합의서를 작성한 후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여 6회에 걸쳐 균등하게 매월 분할 납부합니다. 단, 그러한 날짜가 납부 합의서의 발효일로부터 15일 미만일 경우, 첫 번째 납부일은 그 다음 달 1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합의서의 발효일이 2월 20일인 경우, 첫 번째 분할 납부금은 4월 1일에 납부합니다. 미납 금액은 시의회 결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매월 할부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납부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고객의 납부 합의서가 유효한 동안 시가 발행한 청구서에 포함된 새로운 유틸리티 서비스 요금을 적시에 납부해야 할 고객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시는 핸포드 자치규약 제13.04.050.D.2.h조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b.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납부 합의서에 계좌 소유자 또는 승인된 계좌 서명인이 서명하고 시로부터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 소유자가 직접 시 재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고객이 3영업일 이내에 납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c. 보건안전법 제116910조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제외하고, 시는 추가적인 서면 통지 없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근거하여 납부 계획의 적용을 받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납부 합의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ii. 납부 합의서가 유효한 동안, 고객이 연체되기 전 당시의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그러나 보건안전법 제116910조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단은 해당 조항의 조건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 d. 납부 합의서의 당사자인 고객은 납부 계획 기간 동안 발행된 모든 시 서비스 청구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미결제 납부 합의서가 전액 지급되기 전에 발행된 후속 서비스 청구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 계획 조건에 대한 자격이 사라집니다.

- e. 고객은 매 12개월 기간 동안 한 번의 납부 합의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고객의 이전 납부 합의서의 발효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단, 보건안전법 제116910조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서 청구한 금액이 부정확하다고 느끼는 고객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보건안전법 제13.04.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본은 본 정책의 부속서 “A”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5. **시에 연락하는 방법**. 고객은 (559) 585-2510번으로 전화하여 미납으로 인한 시 제공 유 텔리티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 “A”

### **핸포드 자치규약 제13.04.110.C조**

#### C. 이의신청.

1. 모든 고객은 수도 요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면, 고객은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의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내에 다음 항목을 재무 담당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 서면 이의신청 통지서, (ii) 문제의 청구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 (iii) 시의회가 정하게 될 이의신청 수수료. 이 기간 동안 이러한 항목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무효가 되어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 통지서에는 청구서에 대한 고객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들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문제의 청구서 금액을 입금 및/또는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은 필수 보증금 및 이의신청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청서는 선서 진술서 및 기타 증빙 서류, 그리고 고객이 이의신청 보증금 및/또는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제적인 재정적 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와 더불어 해당 고객의 이의신청 통지서와 함께 재무 담당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문제의 청구서 금액을 입금 및/또는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자신의 실제적인 재정적 무능력에 대해 재무 담당 국장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 담당 국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증금 및 이의신청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됩니다. 재무 담당 국장이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재무 담당 국장의 서면 결정을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문제의 청구 금액을 입금하고 고객의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무 담당 국장은 이의신청 통지서와 분쟁 청구 금액 및 이의신청 수수료(또는 재무 담당 국장은 입금 및/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즉시)를 수령하는 즉시, 시정관리관(city manager)이 지정한 심리 책임자 또는 심리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해야 합니다. 심리 책임자 또는 심리 기관은 재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 날짜에 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당사자 및 시 직원이 제시한 증거를 수령해야 합니다. 심리 후, 심리 책임자 또는 심리 기관은 분쟁 대상인 청구서의 금액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 책임자 또는 심리 기관은 이의신청 심리일로부터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불만이 있는 고객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1094.6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킹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책임자 또는 심리 기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